

碩士學位論文

銀行會計制度에 관한 研究



110809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 專攻

玄 美 月

碩士學位論文

銀行會計制度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漢 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 專攻

玄 美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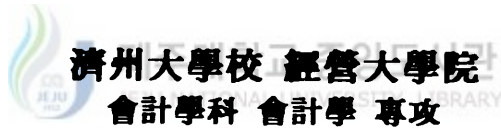
2001년

銀行會計制度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漢 淳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년 6월 일



玄 美 月

玄美月の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년 6월 일

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의 방법 2

제 2 장 우리나라 은행회계의 개관

제 1 절 은행회계 특징

1. 은행회계의 일반적 특징 4
2. 은행회계의 관리 및 규제 11
3. 은행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15

제 2 절 은행회계처리

1. 대손충당금 20
2. 지급보증충당금 27
3. 난외계정(주석사항) 28
4. 고정자산 37

제 3 장 은행회계제도에 대한 각국 회계기준의 비교

제 1 절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비교 45
제 2 절 우발채무(지급보증)회계처리 비교 49
제 3 절 고정자산분류상의 비교 52

제 4 장 우리나라 은행회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회계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제 2 절 회계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제 5 장 결 론 62

參考文獻 65

Abstract 67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회계는 사회에서 서어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회계가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면 서어비스 기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문화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및 정치적 변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회계의 기술적 사회적 유용성은 회계가 위의 변수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개방이라는 우리 경제환경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회계정보의 이용자들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간 투자증대로 인하여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등장하게 된 외국투자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정보를 이용하게 되므로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양적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된 것이다.

은행의 경영성과는 은행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은행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은행법 및 관련법규, 금융감독위원회의 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과도한 보수주의 또는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회계처리가 용인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적인 회계처리로서는 그러한 특수사정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통일적인 회계처리기준 외에 업종별 회계처리기준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회계기준 제94조의 업종별회계처리기준에서는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적용하에서 업종별로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과 “은행회계

해설"이 은행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회계처리기준이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므로 기업회계기준도 준수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이라는 통일성과 은행업 회계처리기준이라는 개별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회계의 목적에 비추어 은행업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필요성과 아울러 은행회계제도 및 회계처리규정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은행회계제도적 측면에서 규제기관 및 규제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은행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은행업회계처리기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회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은행회계제도에 대한 각국 회계기준을 비교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은행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 논문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은 문헌적 조사에 의거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정된 회계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국제은행회계기준, 미국은행회계기준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고 그 외 다수의 국내문헌을 참조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은행업의 범위로는 통화금융기관 및 예금은행에 속하는 일반은행만을 포함하고자 한다. 특수은행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일반은행과 취급하는 업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이 서로 다르고 또 정부투자기관인 은행의 경우는 재정경제원에서 제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므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일반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신탁업무 등에 대한 연구도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신탁업무 역시 일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주 영업형태가 아닌 겸업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은 신탁법으로 그 회계처리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 2 장 은행회계의 개관

제1절 은행회계 특징

1. 은행회계의 일반적 특징

은행회계는 은행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은행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동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은행회계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은행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로서 기업회계의 한 응용분야라 할 수 있고, 은행회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에는 금융자산의 증개, 결지자간의 자금이체 및 결재, 지급보증 등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되는 예수금 등 주로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이들 예금주를 보호해야 함은 물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는 등 그 경영에 있어 공공성이 크게 요청된다. 이와 같이 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의 중요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은행업의 영위에는 타 업종에 비하여 특별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은행회계의 특징은 이러한 은행업의 독특한 성격으로부터 연유되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은행회계는 은행의 건전경영 및 신용질서유지 등 감독당국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규제되고 있다.

둘째, 은행회계는 일반투자자 이외의 다수 예금자 등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지급능력의 적정표시를 중시할 뿐 아니라, 통화금융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유익한 정보제공 등의 정책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1)은행연합회 “은행회계해설” 2001

셋째, 은행회계는 순수한 회계목적의 달성 이외에도 금융사고의 예방 및 내부통제의 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형식적인 면에서 은행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거래는 물론 현금수급이 없이 이루어지는 계정간 또는 계좌간의 대체거래도 현금의 입출금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식 분개법 채용과 일일마감계산을 통하여 회계업무의 검증과 재무상태에 대한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관리회계측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1) 은행대차대조표의 특징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일반기업의 대차대조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²⁾

가) 유동성배열의 특례

일반기업은 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의 계정과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으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고정자산(고정부채)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은 은행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1년 기준에 의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구분은 없다.

이러한 계정과목의 배열은 은행이 일반기업과는 달리 자금의 조달, 운용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수금이나 대출금 등 비중이 높은 과목을 우선 배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년 기준에 의한 장·단기 구분을 배제한 것은 일반은행은 대부분 요구불예금에 의해 조달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상업어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계정과목의 구분이 별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나) 중요성 원칙의 특례

은행회계는 통화관리 및 금융통제 또는 은행감독업무 수행 등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항목을 별도표시하기 위하여 계정과목을 세분

2) 은행연합회 “은행회계해설”. 2001.

하거나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은행 대차대조표의 경우 난외의 주석 표시방법의 활용도가 높다. 우발채무, 약정, 배서어음, 파생상품거래, 대손상각채권, 창구매각유가증권, 환매권부대출채권 매각 등이 주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보수주의(안정성)의 원칙

은행회계에서는 보수주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보수주의의 원칙은 일반기업에서도 준용하여야 할 원칙이지만 다수의 예금주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은행에서는 이 원칙이 보다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원칙은 안정성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은행법 제17조 2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의 1/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는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1/10을 적립하도록 한 상법 제458조의 적립의무보다 엄격한 것이다. 이러한 보수주의 원칙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겠으나 지나친 적용은 회계정보의 왜곡을 초래한다.

라) 지급보증의 표시

은행회계는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의 계상방식이 일반기업과 다르다. 일반기업회계에서는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를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은행회계에서는 우발채무의 가능성이 있는 지급보증 취급시 이를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으로 표시하였다가 지급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확인된 시점에서 대차대조표 난내의 “지급보증”계정 및 이에 대한 구상권을 나타내는 “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에 각각 계상한다. 이는 은행에 있어서의 지급보증이 주요업무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1-1〉 대차대조표의 비교

구 분	일 반 회 계	은 행 회 계
<p>〈 자 산 〉</p>	<p>I.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2) 재 고 자 산 II. 고 정 자 산 (1) 투 자 자 산 (2) 유 형 자 산 (3) 무 형 자 산</p>	<p>I. 현금 및 예치금 II. 상품 유가증권 III. 투자 유가증권 IV. 대출채권 V. 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비업무용고정자산 VI. 기타 자산</p>
<p>〈 부 채 〉</p>	<p>I. 유 동 부 채 1. 매입채무 2. 단기차입금 3. 미지급법인세 4. 미지급배당금 5. 유동성장기부채 II. 고 정 부 채 1. 사 채 2. 장기차입금 3. 장기성매입채무 </p>	<p>I. 예 수 금 1. 원화예수금 2. 외화예수금 3. 양도성예수금 . . II. 차 입 금 1. 원화차입금 2. 외화차입금 . . III. 사 채 1. 원화 사채 2. 외화 사채 . . IV. 기 타 부 채 1. 퇴직급여충당금 2. 지급보증충당금 . .</p>
<p>〈 자 본 〉</p>	<p>I. 자 본 금 II. 자본 잉여금 III. 이익 잉여금 IV. 자본 조정</p>	<p>I. 자 본 금 II. 자본 잉여금 III. 이익 잉여금 IV. 자본 조정</p>

2) 은행손익계산서의 특징

은행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은행의 손익계산서도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3)

첫째, 은행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생산시점과 판매시점이 구분되지 않는 은행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은행업에 있어서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의미하며, 매출총 이익은 이자부문의 순이익과 수수료 등 비 이자 부문의 순이익을 합한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손익계산서의 관련 계정항목을 합산하여야 한다.

둘째,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의 구분이 다르다. 이자수익, 수입할인료, 유가증권이자 등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수익과 이자비용, 지급할인료, 사채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은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이익 및 영업외비용 과목으로 처리되는데 반해, 은행의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 등 자금의 중개업무가 주된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다. 한편, 은행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항목으로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임대료, 지분법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투자주식감액손실 및 환입, 중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익 등이 포함된다.

3)은행연합회 “은행회계해설”. 2001.

〈표1-2〉 손익계산서의 비교

일 반 회 계	은 행 회 계
<p>I. 매출액</p> <p>II. 매출원가</p> <p>III. 매출총이익</p> <p>IV. 판매비와 관리비</p> <p>V. 영업이익</p> <p>VI. 영업외수익</p> <p>VII. 영업외비용</p> <p>VIII. 경상이익</p> <p>IX. 특별이익</p> <p>X. 특별손실</p> <p>XI.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p> <p>XII. 법인세비용</p> <p>XIII. 당기순이익</p>	<p>I. 영업수익</p> <p>(1)이자수익</p> <p>(2)수수료수익</p> <p>(3)기타영업수익</p> <p>II. 영업비용</p> <p>(1)이자비용</p> <p>(2)수수료비용</p> <p>(3)기타영업비용</p> <p>(4)판매비와 관리비</p> <p>III. 영업이익</p> <p>IV. 영업외수익</p> <p>V. 영업외비용</p> <p>VI. 경상이익</p> <p>VII. 특별이익</p> <p>VIII. 특별손실</p> <p>IX.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p> <p>X. 법인세비용</p> <p>XI. 당기순이익</p>

〈표1-3〉영업손익 및 영업외손익의 비교

구 분	일 반 회 계	은 행 회 계
영업수익	(1)매출액	(1)이자수익 (2)수수료수익 (3)기타영업수익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이 익, 상품유가증권배당수익, 투 자유가증권배당수익, 외환거 래이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지 급보증충당금환입액, 기타영 업잡수익 등
영업비용	(1)매출원가 (2)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 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 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 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 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1)이자비용 (2)수수료비용 (3)기타영업비용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손 실, 외환거래손실, 기금출연 료, 대손상각비, 신탁업무운 용손실, 지급보증충당금전입 액, 기타영업잡비용 등 (4)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 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외환 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 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환입, 투자자산처 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법인세환급 액 등	유형자산처분이익, 지분법평 가이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 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 자채권감액손실환입, 기금출 자금평가이익 및 기타영업외 수익 등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 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재고자 산평가손실, 외환차손, 외 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 법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투자자산처분 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법인세추납 액 등	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평 가손실, 투자유가증권처분손 실, 투자주식감액손실, 투자 채권감액손실, 기금출자금평 가손실 및 기타영업외비용 등

2. 은행회계의 관리 및 규제

1) 규제법규

은행회계를 관리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법규를 살펴보면,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과 「은행법」, 「신탁업법」, 「은행업감독규정」, 「외국환거래규정」 등 설립근거법 또는 업무취급 근거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다. 은행의 영업활동은 예·대업무 등의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 신탁업무,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같은 일반기업으로서의 업무, 외국환업무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회계처리기준 및 <별표5>파생상품거래회계처리기준”은 은행의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회계년도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결산일을 원칙적으로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부 외국은행이 본국은행의 결산일에 맞추기 위해 동 단서조항에 의해 결산일을 변경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계 은행의 경우 3월 31일, 호주계 은행의 경우 9월 30일, 캐나다계 은행의 경우 10월 31일 등으로 각각 결산일을 정하고 있다.

결산일을 이같이 특정한 것은 각 은행의 회계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특정시점과 일정기간에 있어서 은행경영의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공고용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공고시한

일반회사는 「상법」 제449조 제3항에 의거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표를 공고하여야 하고 동 법 제 4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상법에서 정하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결재무제표는 사업년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점과 지점에 3년간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결산종료 후 3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거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일 후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 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종류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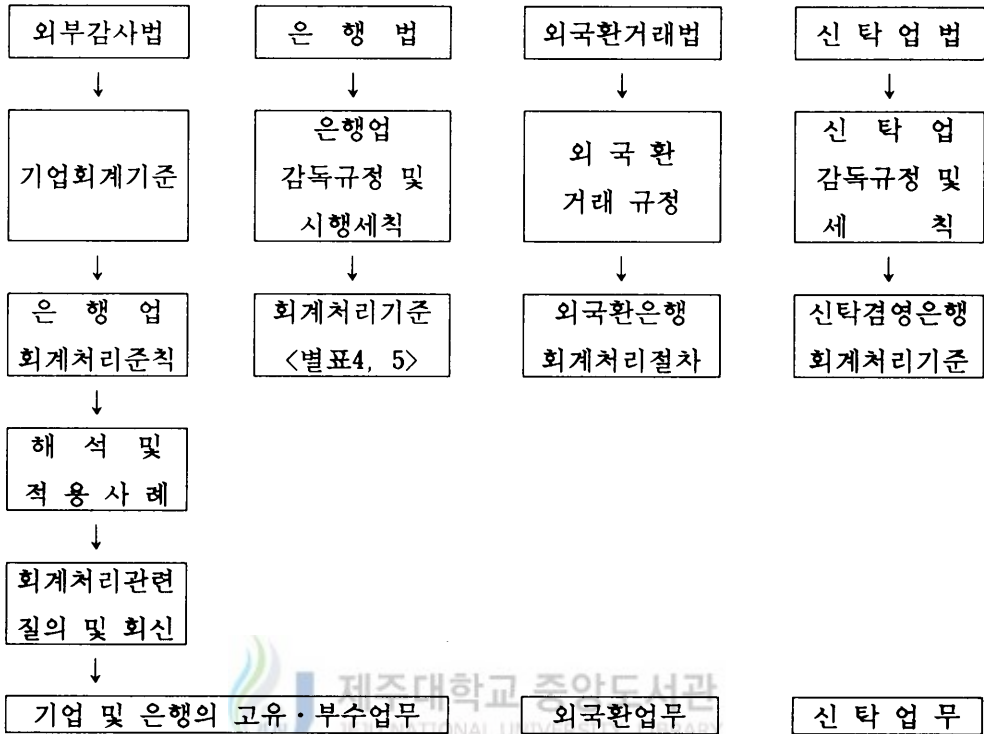
다) 이익금의 적립

은행법 제17조 2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때 순이익금은 법인세차감후순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토록 정한 상법의 적립의무보다 엄격한 것이다.

한편 은행법시행령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적립시기를 “결산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1-1〉 우리나라 은행회계의 규제법규



라) 경영업무의 구분계리

은행은 은행법에 의거 은행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경영할 경우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별도의 양식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업무(직불 및 선불카드업무 포함) 및 종합금융업 관련 계정은 은행 대차대조표상 독립과목인 “신용카드”, “어음관리계좌자산” 등으로 각각 계상하고 있다. 특히, 종합금융업관련계정은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종합금융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규제기관

회계규제기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적용될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권은 1차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으나, 금감위는 그 제정권을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하는 한편,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회계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은행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므로 회계연구원이 정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일반주식회사와는 달리 「은행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은행법」상의 제 규정을 적용받는 데 이러한 규제에는 결산일, 결산공고시한, 공고용 재무제표의 양식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지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은행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금융상품의 개발 등 은행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정과목을 신설, 폐쇄하는 한편, 일상적인 회계처리 등에 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규제대상기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고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은행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1) 의의 및 특징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이 증감하게 되는 바, 이러한 증감변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산상의 단위구분, 즉, 거래를 분류하고 기장하기 위한 계산단위를 계정(Account : a/c)이라 한다. 이러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첫째 계정과목은 거래의 빈도가 많고 금액이 큰 것은 구분 관리하고, 빈도가 적고 금액이 작은 것은 보고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정하게 통합하여야 하는 중요성의 원칙, 둘째 계정과목의 명칭은 거래의 종류와 성질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하는 명료성의 원칙, 셋째 설정된 계정과목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과목을 빈번하게 변경할 경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게 되어 경영성과나 재무상태의 추이를 비교할 수 없게 된다.

부득이 계정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원칙은 계속성의 원칙이라 하며, 넷째 계정과목의 명칭은 다른 계정과목과의 차이점이 식별될 수 있고 동종업계의 계정과목과 형평성을 갖고 비교되도록 적절히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교성의 원칙이라 한다.

요컨대,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금융기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하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회계기준 및 결산 ①항 ②항)

계정의 분류는 여러 가지로 행해지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한편,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두가지 업무를 겸영하므로, 은행업무와 신탁업무를 분별관리하기 위하여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구분하여 별도계정으로 구분계산하고 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일반기업의 대차대조표와 비교할 때 계정과목, 배열 순서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은행이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중에서 광고용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고 있는 계정과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4)

2) 은행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가) 현금 및 예치금

현금및예치금은 현금, 외국통화, 원화예치금, 외화예치금 등으로 한다. 현금은 통화와 타점권으로 하며, 외국통화는 외국환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현찰로 한다. 원화예치금은 소비임치계약으로 타금융기관 등에 원화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하며, 외화예치금은 해외거래은행, 타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한다.

나) 유가증권

(1) 상품유가증권

상품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금융관련업선 중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이 경우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 및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소 등에 의하여 관계법률(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등에 따라 시세가 공표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않는 유가

4) 은행업회계처리준칙. 1999.12.

증권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주식은 장기보유목적의 주식 및 시장성이 없는 주식,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출자전환주식 등을, 채권은 시장성을 불문하고 중도매각채권 및 만기보유채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하는 채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이자율·환율·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자금조달구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채권 중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외에 만기보유채권을 1주라도 중도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까지의 잔존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만기보유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초의 만기보유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보지 아니하여, 잔여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다) 대출채권



대출채권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처리한다.

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 등에 따라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매입어음,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구분한다.

대출금은 자금수혜자 및 취급근거에 따라 기업, 가게,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과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재형저축자금대출금, 재형자금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및 은행간대여금의 9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기업자금대출금은 다시 운전자금대출금, 시설자금대출금 및 특별자금대출금으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운전자금대출금과 시설자금대출금으로 세분된다.

라) 고정자산

고정자산⁵⁾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으로 하는데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 기타의 투자자산 등으로 하며, 비업무용자산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유입자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동산 등으로 한다.

마)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상기의 자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증금(전세권, 전신회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차 등으로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품, 공탁금, 타행간현송채권, 귀금속, 미회수내국환채권, 대리점, 출연금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중요성이 없는 기타의 자산은 잡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은행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가) 예수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금으로 분류한다. 예수금은 자금예수의 형태등에 따라 원화예수금, 외화예수금, 양도성예수금, 기타예수금으로 하며, 이런 예수금 중 고객의 지급결제 편의 도모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하며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인 요구불예금과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예금의 납입·인출 방법에 대해 특정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인 저축성 예금이 있다.

5) 은행회계해설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업무용자산이라 한다.

나) 차입금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금으로 분류하며, 차입금은 자금차입의 형태등에 따라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신용카드채권매출 등으로 한다.

다) 사채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은행법에 의한 발행금융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를 사채로 분류한다. 사채는 원화사채와 외화사채로 하는데, 발행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상법상의 사채와 동일하므로 일반기업 및 타 금융업종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다.

라) 기타부채



기타부채는 상기의 부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신탁계정차, 미지급외국환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팩토링채권미지급금, 수입보증금, 이연법인세대 등으로 한다.

4) 은행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

가) 자본금

은행법 제16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단, 전국을 그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지점수를 참작하여 최저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은행에 투하된 자본가치 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 즉,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며,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나 결손금보전 이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상법 제460조)

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 중 사내유보, 축적된 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익잉여금 증가의 주요인은 당기순이익, 전기손익수정익, 결손금 보전에 따른 이입액 등이며, 당기순손실, 전기손익수정손 또는 배당금 지급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라) 자본조정

자기자본조정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외의 임시적 성격의 자본항목으로서 자본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제 2 절 은행회계처리

1.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란 대출금 등의 적정평가를 위하여 기말 현재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대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를 대손발생시에 인식한다면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대출채권금액도 순실현가능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대

출채권의 순실현가액평가 및 각 회계기간별 적정한 손익의 계상이 가능하게 된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데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⁶⁾

<자산의 건전성 분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을 정하되 기본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요주의
 -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고 정
 -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②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에 상가액 해당부분
 -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에상가액 해당부분

6) 은행연합회 “은행회계해설”. 2001.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회수의문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추정손실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충당금 적립>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하여 건전성분류에 따른 각각의 대손율 이상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의 구분 및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른 충당금 설정률은 다음과 같다.

- 대손충당금의 구분

- ① 원화대출금 대손충당금
- ② 외화대출금 대손충당금
- ③ 지급보증대지급금 대손충당금
- ④ 매입외환 대손충당금
- ⑤ 신용카드채권 대손충당금

- ⑥ 사모사채 대손충당금
- ⑦ 기타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① '정상' 분류채권 : 0.5% 이상
- ② '요주의' 분류채권 : 2% 이상
- ③ '고정' 분류채권 : 20% 이상
- ④ '회수의문' 분류채권 : 50% 이상
- ⑤ '추정손실' 분류채권 : 100%

2. 미수수익보정

미수수익은 실제로 현금이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으로서 계상함이 타당한 부분을 당기 손익에 포함시킴으로써 기간손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결산정리계정이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 (19-1)에서는 회수가능채권은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회수불가능채권은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없으며, 회수불확실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이자의 계상 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거 미수이자를 인식하되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체 등 불건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은행의 미수수익 보정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회계처리기준”에 의하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보정처리하지 않는다.

(가) 결산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연체가 있는 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포함), 지급보증대지급금, 부도통지를 받은 매입외환 및 연체중인 신용카드계정여신 등에 대한 미수수익

(나) 결산일 전영업일 현재 어음·수표부도거래처(어음교환소 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대상을 말함), 이자감면·유예거래처 및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

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에 대한 모든 채권의 미수수익

- (다) 전(가) 또는 (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
-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더라도 정부, 예금보험기금,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가 적용되는 기관(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한함)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의 예치금 또는 납입금이 관계대출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내에서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 (3) 해외지점의 경우 (1)~(2)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기준에 따라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킨 거래처로 하며, 구체적인 등록사유는 관리기준에 의한다.⁷⁾

1. 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의 유용사실
2. 지급보증대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3.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
4.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5.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의 연체사실
6. 신용카드대금 미결제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7.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사실
8.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9.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 등

3. 채권재조정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거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해 채권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채권자

7)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1.1

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의 이전, 출자전환, 전환사채 등의 발행 등으로 당해 채권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존에 있던 대출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화의절차의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채권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채권·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고,
- ②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상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이다.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자산·부채의 평가 및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재조정시점은 재조정내용이 실행된 시점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경우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경우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일 등 재조정 내용이 확정된 시점을 의미한다.

기존 채권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재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현재가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과목으로 하며, 동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 대손충당금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손상각비 ×××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이를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재조정될 채권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할인율은 당해 채권의 발행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다만, 채권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로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의 계약조건의 변경 ·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의 중요한 경우
차액의 처리	· 채권 : 대손충당금(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상각비(충당금 상계후 부족분)
할 인 율	· 발생시 적절한 이자율 (유효이자율, 동종시장이자율)

다음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이전하는 자산 또는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발행을 통한 원리금 변제시 동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명목상의 현금흐름을 당해 채권발생시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주식등 지분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변제대가가 변제된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조정 시점에서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변제대가가 변제하고자 하는 원리금(명목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목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조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은 회수불확실 여부에 관계 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이때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의 범위에는 재조정 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명목상의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연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채권·채무재조정회계와 대손충당금 회계는 유사하다. 그러나 채권재조정 회계는 채무자의 신용이 극히 하락한 상태에서 쌍방 합의등에 의해 대손을 공식화할 경우 적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임에 비하여, 대손충당금 회계는 채무자의 신용이 하락할 경우 채권자가 일방적 주관적으로 대손을 추정할 때 적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 재조정후라도 채무자의 추가적인 신용하락이 발생하여 대손이 추정된다면, 채권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지급보증충당금

동 계정은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으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계정이다. 즉,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이상, “회수의문” 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이상, “추정손실” 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이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인 것과 달리 지급보증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으로 지급보증대지급발생시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한 평가후 추가 설정 또는 환입되어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지급발생시에는 전액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한다.

지급보증대지급금은 은행이 신용장 개설이나 지급보증서 발행에 의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후 결제기일에 고객이 채무를 결제하지 않아 은행이 대신하여 결제(지급보증채무의 이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고객에 대한 구상채권이다.

은행이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개설하여 주거나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발급함으로써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우발채무이지만 고객이 신용장 조건에 의거한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거나,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용자담보지급보증서 등이 은행앞으로 대금청구 또는 교환회부되어 올 경우에는 은행의 확정채무가 된다.

지급보증대지급금은 이러한 채무의 현실적인 이행으로 은행은 대지급과 동시에 주채무자인 고객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바, 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은 이 채권을 나타내는 계정이고 실질적으로 은행의 대출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회계처리예시>

(1) 지급보증충당금 설정시(결산시)

(차)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xxx (대) 지급보증충당금 xxx

(2) 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시(결산기말이 다른 경우 가정)

(차) 지급보증대지급금 xxx (대) 대외계정(결제) xxx

*난외사항의 확정지급보증 소멸기표

(차) 지급보증충당금 xxx (대) 지급보증충당금환입 xxx

대손상각비 xxx 대손충당금 xxx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5. 난외계정(주석사항)

재무제표 본문(난내)에 표시되지 않는 회계정보중 은행의 우발적인 채무 관계, 재무제표 작성상의 중요한 원칙이나 방법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익하고 의미있는 정보는 주석을 통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주석사항중 특히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서의 난외계정에 별도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난외계정에 별도로 표시하는 사항에는 은행의 우발채무(주채무가 확정된 우발채무(확정지급보증)와 주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미확정지급보증)를 구분 표시함), 약정사항의 종류별 금액, 배서어음, 파생금융상품 관련 약정사항과 은행감독정책 필요상 설정되어 있는 계정과목 등(교환회부의퇴타점권, 창구매각유가증권, 대손상각채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등)이 있다.

난외계정에 표시되는 사항은 통상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라 칭하고 있다. 부외거래는 보증료 등 수익증대, 리스크의 이전 등 경제적 효율성은 높은 반면,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시 관련 리스크가 높아 부외거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부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부외자산에 대하여도 적정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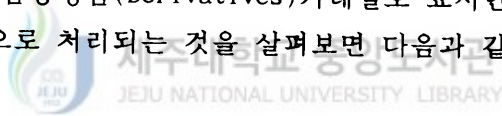
부외거래는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나 거래형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금전채무의 지급이나 특정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으로 사채 발행지급보증, 용자담보지급보증, 상업어음보증, 무역어음인수, 수입신용장관련보증, 어음의 인수,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보증, 신용장발행 등이 있는데 주채무가 확정된 확정지급보증과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지급보증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확정된 지급보증을 대차대조표 난내에 대조계정으로 표시하던 방식에서 수정되어 확정지급보증과 미확정지급보증을 모두 난외에 표시하고 있다.

② 일정한도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약정(commitment)으로 단기채권인수약정(Note Issuance Facilities), 회전인수신용한도약정(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Credit Line제공 등이 있다.

③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계약금액(outstanding face or contract amount)을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거래별로 표시한다.

현행 난외계정으로 처리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4〉 난외계정 과목

계정과목	소 과 목	종 류
확정지급보증	원화지급보증	사채발행지급보증, 용자담보지급보증, 상업어음보증, 무역어음인수, 수입신용장관련보증, 기타원화지급보증(신용파생상품매도)
	외화지급보증	인수, 차관인수, 수입화물선취보증, 기타외화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개설관계	
	기 타	
약 정		원화대출약정,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외화증권인수약정, 역외외화증권인수약정, 유가증권매입계약(원화, 외화), 기타외화약정
배서어음	담보배서어음	
	무담보배서어음	무역어음매출(자행인수금리부무역어음, 타금융기관무역어음), 기타
파생금융 상품거래	이자율관련거래	매입(도)이자율선도, 매입(도)이자율선물, 매입(도)이자율스왑, 매입(도)이자율옵션,
	통화관련거래	매입(도)통화선도, 매입(도)통화선물, 매입(도)통화스왑, 매입(도)통화옵션,
	주식관련거래	매입(도)주식선도, 매입(도)주식선물, 매입(도)주식스왑, 매입(도)주식옵션
	기 타	매입(도)파생상품
신용파생 상품매입		
교환회부의퇴한 타 점 권	마감전(후)취급분	
대손상각채권		
창 구 매 각 유 가 증 권		
환 매 권 부 매출채권매각		

1) 확정지급보증

지급보증계정은 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채무를 보증해주는 경우 이에 따른 우발채무(보증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확정채무)의 지급을 약정하거나 보증채무 등 장래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우발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여신업무에 속하나 신용공여시 자금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서 어음할인이나 대출과 구분된다.

종전 은행법에서는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하여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해 왔으나, 현재 은행법 제35조에서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포함하여 특정한 차주에 은행의 신용공여가 편중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지급보증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구분된다. 통상 지급보증 표시통화와 보증채무 이행통화는 동일하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제입찰보증 등을 위한 원화표시 지급보증을 하고 동 보증채무의 이행은 지급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외화금액으로 이행키로 약정한 경우 등과 같이 지급보증 표시통화와 보증채무 이행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원화 또는 외화지급보증으로 구분해야 한다.

먼저 원화표시지급보증에는 보증대상채무의 종류에 따라 사채발행지급보증, 대출보증, 상업어음보증, 무역어음인수, 수입신용장관련보증, 입찰보증 및 관세담보보증 등이 있는데 이중 사채발행지급보증, 대출보증, 상업어음보증과 관련하여서는 과거에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에 의거 보증요건, 보증한도, 보증상대처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으나 1993년 4월부터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외화표시지급보증은 지급보증대상처가 해외인가 국내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외 외화표시지급보증과 대내 외화표시지급보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갑류외국환은행은 대내외 외화표시지급보증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을류외국환은행은 대내 외화표시지급보증만 취급할 수 있다.

대외 외화표시지급보증은 ① 수입신용장 개설 등 인정된 거래에 있어 채

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보증, ② 해외건설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거주자(예 : 국내본사)의 의뢰에 의하여 비거주자(예 : 해외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 ③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 비거주자의 의뢰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보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대내 외화표시지급보증은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있어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한 보증, ②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국내에서 행해지는 국제경쟁입찰에 거주자가 참여하는 경우 등 거주자간 거래에 있어서 거주자(채권자)에 대한 보증, ③ 외국환은행의 다른 외국환은행에 대한 보증 등의 형태가 있다.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원화표시지급보증 및 외화지급보증은 일반적으로 지급보증과 동시에 이미 확정될 주채무를 은행이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확정지급보증계정에 표시하고,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관계 외화표시 지급보증은 취급당시에는 주채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급채무를 은행이 인수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선적서류 내도시까지 미확정지급보증계정에 표시하고 있다.

즉, 수입신용장의 경우 선적서류(B/L) 영수일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일(항공회사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배서인도 포함. 이하같음),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선적서류 내도시 또는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차관관계 지급보증(신용장방식 및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선적서류 내도시 또는 대기통지서(전신통지 포함)내도시, 차관도입의 경우에는 차관자금의 입금 또는 선적서류 수령일(물자차관의 경우)이며 기타지급보증으로서 수출선수금의 경우 선수금수령일, 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의 경우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발행일에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지입찰 또는 계약체결 등 현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보증채무의 확정일을 정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일에 이를 확정채무로 간주한다.

2) 미확정지급보증

가) 신용장개설관계

동 계정은 은행이 신용장발행에 따라 부담하는 우발채무(보증채무)중 미

확정 우발채무인 것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예컨대, 은행이 일람출급조건 또는 기한부조건의 수입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면 여기에 기재하며, 동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가 도래하거나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면 주채무가 확정되므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인수”, “수입화물선취보증”등의 계정으로 이체된다.

한편, 수입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지난후 장기간 난외계정에 금액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회계처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효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선적서류가 내도하지 아니한 수입신용장에 대하여는 개설의뢰인이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신청서 접수일에, 개설의뢰인의 취소여부 또는 기일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장 유효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최종영업일에 동 금액을 삭제한다. 다만, 당해 신용장에 의한 선적이 확인된 경우 및 기타 신용장개설은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처리 예시>

- 내국수입유산스 L/C 개설시

<난외> 미확정지급보증(신용장개설관계) xxx

-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난외> 확정외화지급보증 (수입화물선취보증) xxx

<난외> 미확정지급보증 차감

- 수입환어음의 인수시

(차) 내국수입유산스 xxx (대) 외화타점예치 xxx

현 금 xxx 내국수입유산스이자 xxx

<난외> 미확정지급보증 차감

*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를 기발급한 경우에는 난외사항 중 확정외화지급보증 (수입화물선취보증) 차감

- 수입환어음의 만기도래시

(차) 현 금 xxx (대) 내국수입유산스 xxx

<참고>

일반적으로 수입대금의 결제를 기한부조건에 의하는 경우에는 누가 신용을 공여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Banker's usance, 수출상이 신용을 공여할 경우에는 Shipper's usance라고 부르는데, 내국수입유산스는 이 Banker's usance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자측이 신용장개설은행 즉, 우리나라 은행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볼 때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usance기간만큼 유예하면서 수입상품을 먼저 인도받게 되므로 동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마련할 수가 있고, 해외의 매입은행 및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출환어음이 표면적으로 기한부어음이나 신용장개설은행에 의하여 일람급으로 결제받게 되므로 사실상 일람급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나) 기 타

동 계정은 차관원리금 상환관계 지급보증, 수출관련 선수금 환급보증 등 제지급보증을 신용장이외의 방식(L/G 등)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우발채무(보증채무)중 미확정 우발채무인 것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또한 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제 2차 지급보증(L/C Confirmation)으로 인한 우발채무도 동 계정에서 처리한다.

차관관계 지급보증(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방식)등을 한 경우 여기에 기재하며, 동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가 도래, 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수입환어음의 인수 등을 통하여 주채무가 확정되므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인수”, “수입화물선취보증”, “기타외화지급보증”등의 계정으로 이체된다.

3) 약 정

동 계정은 일정한도를 정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경우 그 한도를 계상하는 계정이다. 동 계정은 차입자가 약정한 한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Option Buyer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은행은 차입자에 대한 Option Seller로서 프리미엄인 인수수수료 등을 받게 되는 형식을 취한다.

또한 약정관련 내용 중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거래처의 신용악화시 약정의 취소가 가능하여 직접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약정에 대하여는 난외계정에 별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계정에 계리되는 약정은 기간이 1년 초과이고, 은행의 의도로 취소할 없는 약정에 대해서만 처리하여야 한다.

4) 배서어음

동 계정은 배서어음의 양도에 따른 우발채무를 계상하는 계정으로, 무역어음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무역어음을 할인매입 후 동 무역어음(매입어음이라 함)의 매각과 관련하여 표지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매입어음을 직접 매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하고,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발채무로 본 계정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화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국수입유산스의 취급에 있어서 타행이 인수한 은행인수어음을 할인매입하였다가 이를 타행 또는 일반에게 할인매각할 경우 등 대차대조표 난내에 표시되지 않는 미확정 우발채무도 여기에 기재하고 있다.

이는 담보유무에 따라 담보배서어음과 무담보배서어음으로 구분되는 데, 무역어음의 매출에 관한 내용은 전액 무담보배서어음란에 기재된다.

가) 담보배서어음

나) 무담보배서어음

5) 파생금융상품거래

동 계정은 은행, 증권, 보험, 선물회사 등의 경우 파생상품 자기거래의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계약금액(계약단위의 수량)을 파생상품별로 표시하며, 이자율관련거래, 통화관련거래, 주식관련거래, 기타 파생상품거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때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표시 방법으로 ①외화기준일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며, ②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 통화스왑과 같이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래규모가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 이때 원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고, 외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③ 옵션은 매입·매도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한편, 통화옵션의 경우는 매입·매도 여부를 외화기준으로 판단한후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6) 신용파생상품매입

신용파생상품이란 이란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기초변수로 하여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동 상품의 매입이란 대출금, 유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실체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제 3자에게 이전시키는 이른 바 CDS(credit default swap), TRS(total return swap), CLN(credit linked note) 등을 들 수 있다.

7) 교환회부 의뢰한 타점권

동 계정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수납한 타점권의 교환회부를 위하여 대리교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행 당좌계좌에 타점권을 입금시켰을 경우 타점권계정에 대기하고, 예치금계정을 차기함에 따라 재무제표상 타점권이 전액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동 계정에 처리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타점권의 교환회부 거래가 마감후로 기표되어 대차대조표상 타점권이 표시되므로 동 계정에 별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8) 대손상각채권

동 계정은 금융기관이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계상하는 과목이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 주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대손상각채권의 잔액은 금융기관이 상각처리한 회수불가능채

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되지 않았거나, 채권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액이 된다.

9) 창구매각유가증권

동 계정은 은행이 유가증권을 일반고객에게 창구판매한 경우 동 유가증권의 창구 매각규모를 파악하고 환매시 자행판매채권 여부확인 및 만기시 채권금액의 환급대행 등을 위해 창구판매한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따라서 동 계정의 잔액은 창구판매한 유가증권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액면가액을 나타낸다.

한편, 창구판매한 유가증권의 환매시에는 동 계정에서 차감한다.

10)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동 계정은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등에 조건부 환매특약내용(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을 일정기간(예 : 6개월) 연체하는 경우 및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 및 화의 취소결정 등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환매)을 포함하여 무수익여신(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와 국내외 기관투자가 또는 유동화전문회사(SPC) 앞으로 환매특약내용(put back option)을 포함하여 대출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환매특약내용이 포함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따라서 동 계정의 잔액은 환매특약을 맺어 매각한 대출채권 중 환매되지 않은 대출의 매각가액을 표시하며, 이는 정상적으로 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은행이 다시 환매하여야 하는 우발채무를 의미한다.

6. 고정자산

1) 업무용고정자산

업무용고정자산이란 은행이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유형⁸⁾·무형의 고정자산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은행법」 제38조는 자금운용의 고정화를 방지하고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하여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은행법상 자기자본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감독규정”제55조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범위를 1)영업소 및 사무소 2)사택 3)합숙소 4)연수원 5)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6)기타 절차에서 정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계정에는 이와 같은 업무용 부동산 이외에 업무용동산 및 무형 자산등을 포함하여 계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속하는 소과목으로서 업무용토지, 업무용건물, 임차점포시설물, 업무용동산, 건설중인자산, 무형고정자산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업무용토지

업무용토지는 점포, 사무소, 사택, 창고 등의 부지와 운동장 등 영업사용도에 사용하고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이미 영업활동에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모두 사용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내부사정에 의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유택상태에 있는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토지는 물리적 파괴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비상각자산이고 그 취득가액에는 매입대금, 매입부대비용(제수수료, 등기료, 취득세 등), 가공비, 개량비(정리비, 매립비, 개간비 등)의 제비용을 포함한다.

나) 업무용 건물

업무용건물은 업무용의 건축물(지붕·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그 일부인 부속설비 즉 점포, 사택, 기숙사, 창고, 기타의 부속건물과 냉·온방설

8)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유형자산 취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자본화하여 감가상각비로서 미래 효익기간에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동 지출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기준은 은행이 소유하는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수익적지출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즉시 수익에 대응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자본적지출은 미래의 효익기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한다.

비, 전기설비, 통풍배관설비, 승강기설비등의 부속설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입대금에 매입부대비용 및 이용을 위한 수리비용등을 합산 처리한다. 또한 수선에 따른 자본적지출은 건물가액으로 합산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건물은 상각대상자산이므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 임차점포시설물

임차점포시설물은 임차점포내의 시설물공사비(카운터, 타일, 지점장실 등 내부인테리어와 전기설비 등)로 임차점포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말한다.

금고비 등 동산에 속하는 임차시설물은 “업무용동산”계정에, 기타 부속설비로 부동산에 속하는 임차시설물은 “임차점포시설물”계정에 처리하고, 임차기간 등 임차시설물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가능한 기간동안 상각토록 하고 있다.



라) 업무용동산

업무용동산은 업무용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여타의 유형고정자산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차량운반구, 기구비품 및 기계장치 등이 있으며, 업무용동산의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법인세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동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더우기 자체개발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의 배분이 어려워 정확한 개발비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개발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과목인 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해석』에 의거 개발활동 관련비용의 무형자산처리는 ①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②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④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⑤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의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개발(주문개발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보수주의원칙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용동산의 종류에는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가 있다.

마) 건설중인 자산

이는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 제비용을 당해 자산의 준공 또는 완공시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며 당해 고정자산이 완공, 인도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고정자산과목으로 일괄 대체 처리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신축중인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 행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으로 설정된 자산 중 전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일부 완성되어 사용시에는 동 금액만이라도 본 계정에 대체한 후 감가상각해야 한다.

바) 무형고정자산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권리 (예: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품권 등) 및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예:영업권 등) 등을 포함하여 처리하는 계정이다.

(1)상표권

상표권은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10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한 것을 말한다. 최근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미지 부각전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표권의 취득원가 결정에 있어서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서비스 심볼마크와 로고의 제작에 소요된 이의 등록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용역비는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영업권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회사가 초과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 제63조와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중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3)기타

그 밖의 무형자산으로는 창업비, 개발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이 있다.

창업비는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설립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가 및 사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계상한다. 종전에 개업비로 처리하던 개업준비기간중에 발생한 일반관리비등 제반비용은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한 연구비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또한 무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는 당해 무형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 수익적지출이 많다.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화 하여야 하며(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주로 쓰인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유형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나,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해당 무형자산의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처리하고 무형자산상각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다.

2) 비업무용고정자산

비업무용고정자산은 업무용 이외의 고정자산으로서 주로 대출금의 정리에 따라 그 담보물을 유입취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은행법」 제38조 2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취득후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39조와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비업무용자산은 은행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업무용자산여부에 관한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가)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은 비업무용고정자산 중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취득을 위한 경매참가시 당해 부동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여 동 배당요구 예상액을 포함하여 경락인수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경락인수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계처리에시>

- 대출금(2억원)에 대한 담보부동산을 1억원에 경락인수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배당금조로 2천만원을 법원에
지급하였을 경우(부대비용으로 1천만원 지급)

(차) 비업무용부동산 110백만원 (대) 대출금 80백만원
현 금 30백만원

반면,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경락인수가액을 결정하고, 동 임차보증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임차보증금 지급채무를 "수입보증금"계정에 계상함과 동시에 비업무용부동산 장부가액에 합산처리한다.

<회계처리에시>

- 대출금(2억원)에 대한 담보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백만원을 별도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80백만원에 경락인수하는 경우(부대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

(차) 비업무용부동산 100백만원 (대) 대출금 80백만원
수입보증금 20백만원



- 잔여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상각 처리

나) 비업무용동산

비업무용동산은 비업무용자산중 차량, 기계, 선박, 상품 등의 동산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3) 업무용고정자산과 비업무용고정자산의 평가계정

가) 감가상각누계액(업무용의 평가계정)

동 계정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기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동 감가상각액의 누계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감가상각이란 유형고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그 자

제 3 장 은행회계제도에 대한 각국 회계기준의 비교

제1절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비교

1) 은행업회계처리준칙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별로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일괄하여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별 대손충당금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구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처의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거래처를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구분한다. 둘째,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주의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자에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불확실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불확실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한다.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의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거래처는 특별

한 반증이 없는 한 불량거래처로 본다.

가) 6월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의 의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자

다)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라)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마) 폐업후 6월이상 경과한 자

바)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자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 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상각과 관련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고 있는데,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채권 중의 일부 또는 특정부류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특정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 먼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전액을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3항은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50조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의 추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 기준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손예상액의 추정방법으로는 매출채권잔액비율법과 매출채권 연령분석법이 있다. 매출채권잔액비율법은 기말의 매출채권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이 기말의 채권잔액에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법은 기말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며,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

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기업 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비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손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금액을 고려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미국은행회계기준

미국은행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설정은 관련대출포트폴리오의 회수가 능성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대출포트폴리오란 주요 대출금, 리스, 지급보증 및 기타의 대출약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9년 이전에도 연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이하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었으나, 1969년 이후로 연방은행등 은행감독기관들은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단순히 특정퍼센트의 수준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해당은행의 책임이라는 점을 계속하여 주지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대손충당금설정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는 재무회계기준서 제5호⁹⁾ "우발사항의 회계처리"가 있다. 이 규정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회계처리를 정한 것으로서, 우발손실의 경우 (1)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2)동시에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그 예상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공인회계사회가 1983년에 펴낸 업종별 감사지침인 "은행감사"에서는 이러한 재무회계기준서 제5호를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에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매기말 대손충당금잔액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당기중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된 금액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9) FASB No.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1975.3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각종 회계기준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식별되는 대출금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식별되지는 않으나 대손이 예상되는 대출금 풀(pool)으로부터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모든손실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까지 설정되어야 한다.

4) 국제은행회계기준

대출금 및 전도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있어서 특정하게 확인된 손실금액과 경험에 의하여 인식된 잠재적인 손실금액의 합계액 이외에 추가하여 따로 설정한 손실금액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로 설정한 손실금액의 환입에 따른 이익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되어야 하며, 당기손이익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이 그의 대출금, 전도금 및 기타 여신에 대하여 그들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회수불가능해진 결과, 손실을 입은 것은 업무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특정하게 구분 확인될 손실금은 비용으로 인식되어 수익에 대응되고 대출금 및 전도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서 해당 대출금 및 전도금의 계정잔액에서 차감 표시된다. 이러한 손실금의 측정은 경영자의 판단에 의거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평가하는 방법을 매 회계기간마다 계속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은행은 예를 들어 대출자가 일정한 이상 이자나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그 연체된 대출금이나 전도금에 대하여 이자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은행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자발생의 인식이 중단된 대출금 및 전도금 총액과 그와같은 연체 대출금 및 전도금에 대하여 은행이 이자수입을 인식하는가의 여부와 미계상수입이자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금 및 전도금이 상환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하고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모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결되고 대손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대손처리되지 않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출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상환일이 도래된 원금을 특정기간에 갚지 않았을 경우에 보다 일찍 대손처리되기도 한다. 회수불가능한 대출금 및 전도금의 대손처리 시점은 은행마다 다름에 따라 대출금 및 전도금 및 대손충당금 총액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은행은 회수불능 대출금과 전도금

의 대손처리에 대한 방침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절 우발채무(지급보증)의 회계처리 비교

1) 은행회계처리준칙

지급보증충당금은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을 의미한다.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해서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으로 인한 대지급의 발생이 주채무자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부실화는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대지급은 차기 이후 기간에 발생하더라도 당기에 이미 신용등급의 하락, 수익성 악화 등 주채무자의 부실화 징후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다.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급보증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부도등으로 대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을 하지 않은 지급보증과 대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기업회계기준

우발채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발상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득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우발상황으로부터 기대되는 손실을 우발손실이라 하고, 우발상황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우발이익이라고 본다.

현행회계에서는 보수주의에 의하여 우발이익이 발생하는 우발상황은 재무

제표에 반영하지 않는다. 우발이익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도 있고,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이든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없다. 이는 확정이익으로 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여야 한다. 반면에 우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미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하였거나 부채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발손실의 경우에는 발생가능성과 손실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는 우발손실도 있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우발손실도 있으며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우발손실도 있다.

우발채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이다. 따라서 우발채무는 발생할 가능성도 불확실하며 지급한 금액도 불확실한 부채이다.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 않거나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손실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필요가 없고, 단지 주석으로만 공시하면 된다. 그리고 발생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우발손실의 경우에는 주석으로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확정적 사건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적 추정을 필요로 하는 부채는 우발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발채무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발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제품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의무
- 나)판매촉진을 위한 경품권과 관련된 의무
- 다)계류중인 소송사건이나 손해배상책임
- 라)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 마)수취채권을 이전할 때 부여하였던 상환청구권
- 바)수취채권의 대손가능성 등

기타의 우발상황으로는 수취채권을 이전할 때 부여하였던 상환청구권이나 수취채권의 대손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외상매출금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여 양도하거나 받을어음을 할인 또는 배서한 경우에 채무자가 만기일에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 정도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든지 아니면 주석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인 또는 배서양도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국은행회계기준

상업어음의 지급보증 또는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채무가 확정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대차대조표상에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차) 인수대충(Due from customer on acceptance)

(대) 인수계정(Bank acceptance outstanding)

다만,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사항의 하나로서 주석에 표시된다. 한편, 약정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실과 마찬가지로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은 대차대조표에 관련되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계상된다.¹⁰⁾

3) 국제은행회계기준

은행은 국제회계기준 제10호, “우발채무와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건”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우발채무와 약정사항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가) 중대한 벌과금이나 비용을 발생시킬 위험이 없이는 은행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대출연장계정의 성격과 금액

나) 대차대조표 이외의 항목들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들의 성격과 금액으로서 다음에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한다.

10) FASB No. 6 “Classification of short-Term obligations Expected to Be Refinanced” 1975. 5

- (1)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 대출금에 대한 채무적 보증으로서 이용되는 스탠바이 신용장과 은행결재보증등 직접채무보증
- (2) 특정거래와 관계되는 이행보증, 입찰보증, 품질보증, 상설신용장을 포함하는 특정 거래관련 우발채무
- (3) 선적상품을 담보로 이용한 선하증권 등 상품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단기자동해제 무역관련 우발채무
- (4)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되지 않는 판매 및 재구매 약정사항
- (5) swap, option, 선물등을 포함하는 이자 및 외환율 관련 항목들
- (6) 어음발행한도, 신주인수한도 기타의 약정사항

국제회계기준 제10호, “우발채무 및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발채무를 다루고 있다. 본문은 특히 은행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은행은 번번히 우발채무를 여러종류의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 관계되고 그 은행이 일반기업보다는 크고 또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은행들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으나, 우발채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우발채무는 때때로 은행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수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때가 많다. 이러한 항목들은 다른 위험들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게 되는데 그 예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의 헷징을 들 수 있다. 대차대조표 이외의 항목들은 고객을 위하여 수행하는 거래로부터 혹은 은행자산의 거래 행위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은행의 우발채무 및 계약이 불가능한 약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은행의 유동성, 건전성 및 고유의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또한 은행이 행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이외의 거래항목들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요구한다.

제3절 고정자산분류상의 비교

1)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으로 구분하

는데,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 기타의 투자자산 등으로 하며, 비업무용 자산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유입자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동산 등으로 한다.

2) 기업회계기준(유형자산)

유형자산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및 용역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 이 정의에 비추어보면,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형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따라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둘째, 유형자산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의 용역잠재력을 지닌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그 용역잠재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하여 부유하며 수익창출활동에 이용됨에 따라 당기에 소모된 용역잠재력을 비용인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우발적인 사고나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은 미래의 용역잠재력이 없기 때문에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대체하고 적절히 감액처리하여야 하며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인 공구와 기구 및 비품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모품비 등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의 자산이다. 이점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과 구별된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며 기업이 장기간 사용할 자산이지만 이들의 물리적 실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종류와 수는 대단히 많은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1- 4> 은행회계제도에 대한 각국 회계기준의 비교

구분	은행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미국은행회계기준	국제은행회계기준
대손충당금	자산분류기준에 따라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50%”, “추정손실 100%”로 구분하여 설정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며, 매출채권 잔액비율법과 매출채권연령분석법이 있다.	주요 대출금, 리스, 지급보증, 기타의 대출약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	특정하게 구분 확인될 손실금은 비용으로 인식되어 수익에 대응되고 이러한 손실금의 측정은 경영자의 판단에 의거한다.
우발채무·지급보증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정비율을 달리 정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 우발채무 중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우발손실의 경우 발생가능성과 손실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는 우발손실도 있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우발손실도 있으며 공시할 필요가 없는 우발손실도 있다.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사항의 하나로서 주석에 표시한다. 약정상환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실과 마찬가지로 지급보증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은 대차대조표에 관련되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계상한다.	은행은 번번히 우발채무를 여러종류의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 관계되고 은행이 일반기업 보다도 크고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정자산	고정자산을 투자자산, 업무용고정자산, 비업무용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업무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며, 비업무용고정자산은 평가충당금을 설정.	고정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매기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제 4 장 우리나라 은행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회계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규제는 회계기준의 설정과 이를 준수하여 재무보고를 행하도록 하는 사전적 형태와 요구되는 절차나 형식이 제대로 준수되는가 확인하는 감독이나 회계감사를 통한 감사 등의 사후적 형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은 사후적 규제의 목적을 위하여 사전적 규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위해서는 회계규정을 통한 회계규제는 사전적 규제의 개념이므로 현행 은행업 회계제도의 내용이 사전적 규제의 성격을 올바르게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은행업 회계규제는 사후적 규제의 목적이 되는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즉, 은행업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은행업의 영업 등 제반 경영에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서 요구하는 특별한 규정 중 하나로 회계처리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중 많은 부분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능을 용이하게 하거나 감독목적에 맞게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보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의 추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는데 비해서 은행업에서는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른 대손 설정율을 정해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은행업에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회계처리방법이 필요함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은행업에만 요구되는 특별한 회계처리규정과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을 위한 규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은행업 회계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규정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차적으로 발표한 규정들을 모은 형태가 되어, 은행업종에 관련된 모든 회계규정이 총 망라되도록 체계적이

지 못하다. 또한 규정된 계정과목 이외에는 다른 계정과목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같이 규정된 내용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고, 따라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위한 탄력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둘째, 감독기관의 감독 목적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의 건전성 유도와 업종별 재무제표의 통일성을 위해 규정된 회계규정 중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¹¹⁾과 모순되는 항목도 있다.

셋째, 감독기관의 감독과 통제기능을 우선하다보니, 재무보고의 목적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의 판단이 회계처리규정의 선정기준이 되지 못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과 통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거나, 특정한 회계처리 방법을 지정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을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계정과목을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분류를 해서 타업종과 비교가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

첫째, 은행업 회계처리기준은 은행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금융신상품의 개발 등과 같이 다양한 거래들의 성격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의 설정 등 회계처리에 융통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회계처리규정 중 GAAP이라는 용어와 모순되거나 경영의 건전성이나 업종의 통일성 감독기능만을 위한 규정은 마땅히 GAAP에 모순이 없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대손충당금설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충당금설정을 정하는 것이나 대차대조표분류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배열을 하는 것 등이다. GAAP상의 통일성도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GAAP에 위반되는 규정은 더욱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사회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유용성 여부가 기준이 되어 적절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올바른 형태의 경제적 결과성을 고려한 회계규

11) 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12) 이재은 “우리나라 은행업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p. 95

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감독기관의 사후적인 감독 목적에 대한 규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후적 감독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던 회계규정들은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의 형태로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의 건전성 목적을 위한 이자수익 보정의 제한 규정 등은 회계처리 규정이 아니라 감독규정으로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도록 요구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동시에 배당가능이익금액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나 부속명세서로서 첨부하도록 요구하면 감독기관의 감독목적 을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회계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기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하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지 않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회계기준 및 결산 ①항 ②항

일반은행의 대차대조표상 과목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분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와 같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유동, 고정, 구분의 구분을 하지 않고 대출금 및 예금의 용도 또는 형태에 따라 대출금 항목에서는 운전자금 대출과 시설자금 대출등으로, 예수금 항목에서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는 등 동 업무내용에 따른 과목구분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계정과목을 배열함에 반하여 일반은행의 계정과목은 은행의 성격상 여신 및 수신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산에서는 여신관계 제 항목을 부채에서는 수신관계의 제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열하는 중요성의 원칙에 의한 계정과목의 배열이 되고 있는 바, 과목 구분시 1년 기준에

의한 유동, 고정액의 구분이 배제되고 업무내용에 따른 과목구분의 결과로 부여준다.

은행의 경우 대출금의 종류별로 영업순환기간이 다르고 1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대출금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리되어 대차대조표에 의한 기업상태의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은행의 계정과목 구분에 1년 기준에 의한 유동, 고정원칙의 적용이 되고 더욱이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계정과목 배열원칙을 적용하여 일반기업회계의 과목분류에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제은행의 계정과목배열이 유동성배열법을 따르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의 대차대조표 양식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 등의 구분에는 유동성과 고정성의 구분 원칙을 적용하며 또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과목배열로 기업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양식에 접근시키고자 하나, 은행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완전한 일치와 금융업무의 특성을 절충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즉, 자산항목 및 부채항목에 있어서 영업순환 주기 또는 상환기일이 비교적 단기인 자산 및 부채는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비교적 장기인 자산 및 부채는 고정자산과 기타자산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산항목에 속하는 대출금 중 비교적 단기대출인 운영자금 대출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비교적 장기대출인 시설자금대출금은 고정자산과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부채항목에 속하는 예수금과 차입금 중 상대적으로 영업순환주기가 단기인 예수금은 유동부채로, 상대적으로 영업순환 주기 및 상환기간이 장기인 차입금은 고정부채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¹³⁾

2) 대손충당금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는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서 실제 대손충당금의 설정에는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 각 구분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이 궁극적으로는 신용위험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

13) 김선녀 “은행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참조

하고 있지 못한다. 즉, 동 규정에서는 일정한 계정과목의 잔액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계정과목간의 상이한 신용위험의 구성과 동일계정과목내의 상이한 신용위험을 가진 거래선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연체된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기간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격상 신용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평가하여 “정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올바른 신용위험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은행회계처리와 기업회계기준, 국제은행회계기준, 미국은행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대출포트폴리오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손충당금회계는 신용위험을 회계처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모든 신용에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손충당금 설정의 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손충당금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설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1969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연방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으로 삼았으나, 그 이후로는 신용위험의 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차이로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은 신용위험의 평가에 근거해야 하는 원리에 따르지 않은 결과로써, 은행의 합리적인 신용위험의 평가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국제은행회계기준에 의하면 손실금의 측정은 경영자의 판단에 의거한다고 되어있다.

미국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과 같이 모든 신용에 관련된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은행회계기준에서처럼 필요한 법정절차가 완결되고 대손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대손처리하지 않는다든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상환일이 도래된 원금을 특정기간에 갚지 않았을 경우에 보다 일찍 대손처리되는 것처럼 획일적인 방법과 설정율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회수불가능한 대출금 및 전도금의 대손처리 시점이 은행마다 다름에 따라 대출금 및 대

손충당금 총액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를 수 있는 경우는 대손처리에 대한 방침을 주석에 기재하면 보다 더 정보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3) 우발채무(지급보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급보증계정은 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채무를 보증해주는 경우 이에 따른 우발채무(보증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확정채무)의 지급을 약정하거나 보증채무 등 장래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우발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은행회계에서는 이미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은행회계에서는 확정된 지급보증과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해 우발채무를 인식하고 있지만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우발채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부채이며, 발생할 가능성도 불확실하며 지급할 금액도 불확실한 부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맞을 것이다.

4) 고정자산분류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회계기준과 은행업 회계처리준칙간에 고정자산의 분류방법상의 차이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은행의 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하며, 비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즉 1차 이상 공매를 실시한 비업무용고정자산 중 최종 공매가액(일시불가액 기준)이 장부가액을 하회하는 것에 대해서 건별로 그 차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며, 충당금은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비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는 기말에 1차 이상 공매를 실시하지 않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계정명칭도 다르므로 기업회계기준과 비

교하기 어렵다. 또한, 비업무용고정자산이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유입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이므로 적절한 원가배분을 해야하므로 평가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본다. 평가충당금을 설정하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 기준의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결 론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화로 인해 금융의 범세계화(Global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회계적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외국투자자들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회계정보가 지니고 있는 질적, 양적인 중요성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이 요구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계정보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은행업 회계제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는 이유로 지나치게 금융기관의 공공적 기능이 강조되고, 따라서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위주의 회계규제 형태로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회계의 목적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며, 이것이 곧 앞으로 은행업 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업 회계제도는 사전적 규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1) 은행업 회계처리기준은 은행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거래의 성격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주어져야 하며, (2) 은행업 회계처리 규정 중 GAAP에 모순되거나 경영의 건전성이나 업종의 통일성등 감독기능만을 위한 규정은 GAAP에 모순이 없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3) 일부 회계처리기준들은 현재 GAAP과 모순되지 않더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2)와 (3)의 측면은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개선안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자산항목 및 부채항목에 있어서 영업순환 주기 또는 상환기일이 비교적 단기인 자산 및 부채는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비교적 장기인 자산 및 부채는 고정자산과 기타자산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과 같이 모든 신용에 관련된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은행회계기준에서처럼 필요한 법정절차가 완결되고 대손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대손처리하지 않는든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상환일이 도래된 원금을 특정기간에 갚지 않았을 경우에 보다 일찍 대손처리되는 것처럼 확실적인 방법과 설정율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회수불가능한 대출금 및 전도금의 대손처리 시점이 은행마다 다름에 따라 대출금 및 대손충당금 총액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를 수 있는 경우는 대손처리에 대한 방침을 주석에 기재하면 보다 더 정보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셋째, 은행회계에서는 확정된 지급보증과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해 우발채무를 인식하고 있지만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지급보증계정에 인식하며, 또한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우발채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부채이며, 발생할 가능성도 불확실하며 지급할 금액도 불확실한 부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맞을 것이다.

넷째, 기업회계기준과 은행업 회계처리기준간에 고정자산의 분류방법상의 차이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은행의 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하며, 비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즉 1차 이상 공매를 실시한 비업무용고정자산 중 최종 공매가액(일시불가액 기준)이 장부가액을 하회하는 것에 대해서 건별로 그 차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며, 충당금은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비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는 기말에 1차 이상 공매를 실시하지 않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계정명칭도 다르므로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비업무용고정자산이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유입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이므로 적절한 원가배분을 해야하므로 평가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본다. 평가충당금을 설정하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은행회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회계처리기준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재무보고의 목적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감안해서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논문

- 김선녀 “은행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현경숙 “국제회계 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명곤 “은행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 박승집 “우리나라 은행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 이화용 “은행회계처리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대출금미수이자와 유가
증권평가를 중심으로-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배진우 “국제회계기준, 감사기준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재은 “우리나라 은행업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1992.
- 김 영 “한국의 결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1999
- 신준용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기업회계제도의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 서정의 “우리나라 은행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
사학위 논문,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5.

2) 단행본 및 기타

- 은행연합회, 은행회계해설, 2001.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1.1
국제은행회계기준, 1996
은행업회계처리준칙, 1999.12. 개정
기업회계기준, 1998. 개정
송상엽저 “중급원리” 제6판, 웅지경영아카데미

2. 외국문헌

- FASB No 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1975.3.
FASB No 6 "Classification of Short-Term Obligations Expected to Be Refinanced". 1975.5.
FASB Statement72 "Accounting for Certain Acquisition of Banking or Trift Institution". 1983.2.
FASB Statement91 "Accounting for Nonrefundable Fees and Costs of Associated with Originating or Acquiring Loans and Initial Direct Costs of Leases".
FASB Statement104 "Statement of Cash Flows-Net Reporting of Certain Cash Receipts and Cash Payments and Classification of Cash Flows from Hedging Transactions". 1989.10.
FASB Statement109 "Accounting for Income Taxes". 1992.2.
FASB Statement115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 in Debt and Equity Securities". 1993.5.
APB Opinion 23 "Accounting for Income Taxes - Special Areas". 1972.4.

Abstract

A study on accounting for the commercial banking institutions

MiWol Hyun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oon Park

Globalization of banking has been made possible through banking self-regulation and open banking. Changes in banking environment in open capital market is requiring new forms of accounting information from domestic banking institutions. As the interested parties are extended to foreign investors, importance of quantity and qua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has been given more weight than any other time in the past. In order to provide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by the changes in the banking industries such as globalization of banking, uniformity and comparabi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corporate accounting and banking accounting is becoming more important.

Domestic commercial banking institutions raise funds by collecting capital from an unspecified number of the general public. These same institutions also raise fund by giving ownership to a large number of shareholders. Therefore, the public role of banking institution has gained a greater significance and thereby accounting regul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putting more emphasis on the auditing institution's auditing function. This is the result of not considering the major purpose of the accounting which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users. In order to improve this system, domestic accounting system should change its direction of improvement to perform regulatory function in advance. Also,

- 1) Banking institutions accounting management standards should be m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o that those standards could be used for all banking related trades and should be given adaptability to correctly reflect characteristics of diverse trades.
- 2) Among the banking industry accounting management regulat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or emphasizing only the auditing function such as soundness of management or unification of business category should be revised to stay consistent with GAAP.
- 3) Some accounting management standard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present GAAP also needs to be revis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